
정 관



사단법인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제정: 2011년 05월 16일

개정: 2011년 12월 12일

개정: 2012년 05월 04일

개정: 2013년 03월 10일

개정: 2022년 03월 0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World Para Taekwondo Federation (약칭, WPTF)" 표시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태권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장애인에 맞는 수련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경기를 주관함으로써 장애우 수련인들에게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줌과 동시에 태권도로 하나가 되는 차별 없는 태권도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태권도 경기 기술 및 경기 방식의 연구
2. 장애인 태권도 홍보 및 기술 보급
3.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및 국제심판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강습회
4.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5. 각종 국제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6. 장애인 태권도 파라림픽(Paralympics) 채택을 위한 추진 사업
7. 세계 장애인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
8. 간행물 발간
9. 기타 본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 연맹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 본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자.
- ② 특별회원: 본 연맹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태권도 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개인.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연맹의 정회원은 연맹의 정관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 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4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원의 제명) 본 연맹의 회원으로서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재(이사장)이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9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주요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연맹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제10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1회로 3월 중에, 임시총회는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총재가 소집하고 총재는 그 의장이 된다.

② 총재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이사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3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4조(총회 의사록) 다음 각호의 회의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사의 경과, 요령 및 의결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맹은 총회 의결을 통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대표권 있는 이사) 1인
2. 이사 8인(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포함)
3. 감사 1인
4. 명예총재 : 약간 명
5. 부총재 : 약간 명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다만, 최초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에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총장) ① 제4조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총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총재가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때

제20조(총재 선출 방법 및 임기) ① 총재는 본 연맹을 대표하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재의 궐위시에는 지체 없이 후임 총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21조(총재 및 이사의 직무) ① 총재는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연맹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맹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총재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2조(총재의 직무대행) 총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재가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맹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4조(임원의 대우) 본 연맹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

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사무총장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본 연맹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약,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안
 5. 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안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국 가입 승인 사항
 9. 세계장애인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지 선정, 일정 승인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재가 부의하는 사항
- ② 이사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를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특례) ① 총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제척 사유) 총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1조(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하여 결의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의 기록 및 비치는 이 규정 제14조(총회 의사록)에 준용한다.

제 6 장 기술 합동회의

제33조(기술 합동회의 기능) ① 기술 합동회의는 다음의 사안을 논의, 의결한다.

1.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품새 경기 기술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태권도 겨루기 및 품새 경기 규칙 제정 및 개정 관한 사항
- ② 기술 합동회의 회의 결과는 최종 의결 기관으로서 의결 결과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34조(구성) ① 기술 합동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위원회, 경기위원회, 심판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2. 각 회원협회 기술위원장
- ② 본 연맹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기술 합동회의 의장이 된다.

제35조(기술 합동회의 소집) 기술 합동회의 개최는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 시작 3일 전 또는 매년 2월경 소집한다.

제36조(의결 정족수) ① 기술 합동회의 개최는 정족수와 상관없이 본 연맹 기술위원회 및 3개 분과 위원회의 1명의 위원만이 참석해도 개최 할 수 있다.

② 기술 합동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서면의결) 경기 기술에 관한 사안에 따라 총재의 인가에 따라 기술 의장은 회의 소집 없이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서면 결의시 투표자 과반수의 찬동으로 동의안은 가결된다. 그 결과는 본 연맹 간행물을 통해 공표되며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연맹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중 기본재산목록과 같다.

제39조(재산의 평가) 본 연맹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40조(재원) ① 본 연맹의 유지 및 운영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개인 및 단체의 기부금, 찬조금, 후원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기타의 수입

② 본 연맹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본 연맹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42조(잉여금 처리) 연맹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 편입

제43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연맹의 재산은 이 연맹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연맹의 설립자
 2. 연맹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연맹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연맹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본 연맹의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의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사 무 부 서

제47조(사무국) ① 총재의 지시를 받아 본 연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가 승인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위원회설치 및 조직구성

제 48 조(기타 위원회)

- 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 1항의 위원회등 자문위원회 외에 총재의 자문기구로서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 1 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제 2항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재가 따로 정한다.

제 49 조(기타 조직)

- 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국내·외의 부설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50조(정관변경) 본 연맹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규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51조(해산) 본 연맹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잔여재산의 귀속) 본 연맹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체육관련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5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